

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공고

「관세법」 제3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, 「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20조제3항에 따라 추가 지정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품목번호(HSK)	품목명	비고
0910.11-2000	건조생강(안부순것)	지정
0910.11-9000	기타생강(안부순것)	지정
0910.12-2000	건조생강(부순것)	지정

※ 적용기간 : 지정 해제 시 까지

시행일 : 2022. 3. 1.

관 세 청 장